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3. 9.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9년 2월 13일

나. 발 의 자 : 최미경 의원 외 5인

다. 회부일자 : 2009년 2월 27일

라. 상정일자 :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9년 3월 2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최미경 의원)

가. 제 정 이 유

- 일반인에 비해 문화생활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영등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시설과 지역문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지정·설치하도록 하고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의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시설을 개선할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7조)
-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음(안 제8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공연장 등에는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관람 및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 영등포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시설과 지역문화 복지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며,
- 안 제4조에는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지정·설치하도록 하고
- 안 제5조 및 제6조에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영등포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시설을 개선할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들이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상인 등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98
----------	-----

발의년월일 : 2009년 2월 일

발 의 자 : 최미경 의원외 인

1. 제정이유

- 일반인에 비해 문화생활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영등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지정·설치하도록 하고,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의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시설을 개선할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7조)
-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음(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지정·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편리하도록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와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